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인 ‘5년간 국내외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7조제2항)
- 나. CVC가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상출제집단에 속할 경우, 9개월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안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7조제1항)
- 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한 핀테크 등 금융회사 범위를 ‘업종’에서 ‘인가’ 기준으로 정비(안 제8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25조제2호, 제36조제2호)
- 라.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20% 상향(안 제7조제2항)

- 마. 모태펀드 탈퇴 시 투자금·수익 회수 근거 마련(안 제44조제5항·제6항·제7항)
- 바. 벤처투자회사 해·청산, 벤처투자회사·조합 등의 검사 업무를 지방중기청으로 위임(안 제48조제1항)
- 사. 창업기획자 투자 통계 업무를 창업진흥원에서 AC협회로 이관(안 제48조제3항·제6항·제7항)
- 아. 벤처투자 가능 기금 확대(특정 기금 → 국가재정법 상 기금 전체)에 따라, 특정 기금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46조제1항·제2항, 별표1)
- 자. 개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20%)를 폐지함에 따라, 세부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정비(안 제35조제1항·제2항·제8항)
- 카. M&A펀드 투자의무(60%) 산정 방식 명확화(안 제35조제7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 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기업을 말한다.

1.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을 것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제9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제외한다)”를 각각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호가목1) 중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정보통신기술”로, “업종”을 “금융회사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을 “여신금
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는 회사”로 한다.

제17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제외한다)”를 각각 “9개월 이내에 처분해
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다목 중 “법 제70조제5항”을 “법 제70조제6항”으로 한
다.

제25조제2호가목1) 중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정보통신기술”로, “업종”을 “금융회사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을 “여신금
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는 회사”로 한다.

제26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제외한다)”를 각각 “9개월 이내에 처분해
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문화산업전문회사”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를 “투자하여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는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다목 중 “법 제70조제5
항”을 “법 제7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투자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제36조제2호가목1) 중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정보통신기술”로, “업종”을 “금융회사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을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는 회사”로 한다.

제37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제외한다)”를 각각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문화산업전문회사”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투자하여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법 제70조제4항 후단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은 모태조합에 투자원금과 투자수익, 운용수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을 “법 제24조제2항제4호”로,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을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초기투

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6. 법 제5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7. 법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접수와 등록 말소

8. 법 제72조에 따른 검사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 삭제

5. 삭제

6. 삭제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생략) <u><신설></u>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창업기업을 말한다.</u> 1. <u>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u> <u>이 지나지 아니할 것</u> 2. 「 <u>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u> <u>으로부터 투자유치 이력이 없을 것</u> ③ ----- ----- 20 <u>퍼센트</u> -----.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생략) ②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8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으로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
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1. -----

[illegible]

4. _____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생략)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16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1) <u>금융 및 보험업으로서</u>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u> <u>정하여 고시하는</u>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그 외 기타 <u>여</u> <u>신금융업은 제외한다)</u> <u>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u> <u>금융회사등</u> 2) (생략) 나. ~ 바. (생략) 3. ~ 10. (생략)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 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1) <u>정보통신기술</u>----- ----- ----- ----- <u>금융회</u> <u>사등으로서</u> <u>중소벤처기</u> <u>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 <u>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u> - <u>여신금융업에 해당하</u> <u>는 업무는 제외한다)로</u> <u>하는 회사</u> 2) (현행과 같음) 나. ~ 바.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 ----- -----. 1. ----- ----- ----- 가. ----- ----- ----- -----
--	--

(창업기획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창업기획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창업기획자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3. (생략)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
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 2. (생략)

---- 9개월 이내에 처분해

야 한다)

[illegible]

2. ~ 3. (현행과 같음)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인가. · 나. (생략) 다. <u>법 제70조제5항</u>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 마. (생략) 4. (생략)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u>금융 및 보험업</u>으로서 중	3. -----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법 제70조제6항</u>----- ----- ----- 라. · 마.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25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 1) <u>정보통신기술</u>-----
---	---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
로 하는 금융회사등

2)·3) (생략)

나. ~ 사. (생략)

3. ~ 10. (생략)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에 대한 예외)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
 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게 된 경우(벤처

 ----- 금융회
 사등으로서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
 - 여신금융업에 해당하
 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는 회사

2)·3) (현행과 같음)

나. ~ 사. (현행과 같음)

3. ~ 10. (현행과 같음)

제26조(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에 대한 예외) -----

 -----.

1. -----

 가. -----

투자회사와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벤처투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 · 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벤처투자회사와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 · 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략)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

-----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illegible]

다. (현행과 같음)

라. -----

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3. (생략)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③ ④ (생략)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 (생략)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가. 나. (생략)

----- 문화산업전문회사 -----

----- 투자하여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3. (현행과 같음)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법 제51조제1항-----

-----.

<삭 제>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라. (생략)

4. ~ 7.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합병 전에 인수·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1. (생략)

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다. 법 제70조제6항-----

라.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
한 투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의2.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2의3.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인수

2의4.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
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인수

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
회사 출자지분의 인수

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과
체결한 조건부지분인수
계약 또는 조건부지분전
환계약의 인수

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삭 제>

<삭 제>

<삭 제>

운영되는 사업 지분의 인수

3. ~ 5. (생략)

⑧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
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
합원의 행위제한) 법 제52조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
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융회사등은 제외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3.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6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
합원의 행위제한)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1) 정보통신기술-----

----- 금융회
사등으로서 중소벤처기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등

2) (생략)

나. ~ 라. (생략)

3. ~ 8. (생략)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
- 여신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는 회사

2) (현행과 같음)

나. ~ 라. (현행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

1. -----

가. -----

--- 9개월 이내에 처분해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

야 한다)

[illegible]

다.

문화

산업 전문 회사-----

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
문화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4. (생략)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모태조합 운용
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투자하여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70조제4항 후단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모태
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
원은 모태조합에 투자원금과 투자
수익, 운용수익의 배분을 청구
할 수 있고, 모태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
퇴하는 조합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⑦ ----- 제6항-----

-----.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신설>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삭제>

<삭제>

①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5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7. 법 제57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접수와 등록 말소

8. 법 제72조에 따른 검사업무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업 기획자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 및

업무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창업 기획자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업 기획자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⑥ -----

----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초기투자 액셀러레이터협회---

1. 법 제24조제2항제4호-----
----- 전문인력 해당 여부
의 확인 및 관리-----

<삭 제>

<u>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u> <u>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창업 기획자의 경영실태 조사에 관 한 업무</u> <u>4. · 5.</u> (생략) <u>6.</u> (생략) ④ · ⑤ (생략) ⑥ 중소기업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u><삭 제></u> <u>2. · 3.</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u>4.</u>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⑦ ----- ----- 제6항--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연 락 처	(044) 204 - 7711